

정 인

정보공개법 제정의 필요성 및 추진경위

홍춘의
총무처 행정능률과장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정보공개제도란 국민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정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뜻한다.

즉,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실정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청구권의 주체, 청구권의 기본적인 내용과 한계, 공공기관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상의 알권리를 사법적인 구제의 대상이 되는 실정법적인 권리가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를 전제로 하여 공개를 의무화 하는 청구공개, 즉 좁은 의미의 정보공개제도와 국민의 청구여부와는 상관없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제공, 즉 넓은 의미의 정보공

개제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적측면의 정보공개제도는 청구를 전제로 한 청구공개를 의미하며 본고에서 언급하는 정보공개제도도 청구공개를 뜻하는 좁은 의미의 정보공개를 뜻한다.

2. 정보공개법 제정의 필요성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알권리를 보장하되 국민의 정보원에 대한 접근을 취재활동의 자유를 의미하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권적 알권리 이외에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 획득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격으로 알권리를 보장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무한경쟁의 국제경쟁체제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임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자기실현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문화수준의 향상과 학문의 연구 등에서도 크게 기여하게 되며 유리알 행정으로서 국정감사의 감시 및 비판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어 정부의 독선과 불

공정성을 견제할 수 있고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부정부패 및 비리를 방지하고 권위주의적 행정풍토의 쇄신을 통한 비밀주의의 폐습을 제거하여 행정을 개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우리 행정의 선진화 되기위하여 이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3. 정보공개법 제정 추진경위

정부에서는 정보공개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90년대초부터 인식하고 '92년에 정보공개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를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93년 2월에 이에 대한 도입방향 및 법률모형을 제출받았으며 '92년도에 "정부공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정부기능의 분류에 있어 기존의 분류체계에 정부기능을 10진분류에 의해 분류토록하는 주류(主類)기능을 신설하는 등 문서의 분류 및 검색체계를 합리화하여 정보공개제도의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체제를 구축한 바 있으며 문민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문민정부의 공약사업인 이법의 제정에 착수하여 '93년초부터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미 이 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와 '94년도에는 스웨덴, 네델란드, 프랑스 등 유럽제국, '95년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을 방문하여 입법 조사 및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정부의 정보공개법 시안을 만드는데 반영함은 물론 입법이전에 정보공개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부의 시행기반 구축 및 운영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훈령 제 288호로 '94년 3월 2일자로 행정정보공개 운영 지침을 제공 시달하여 행정정보공개제도 시범운영에 관한 일반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94년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92년도이후 생사문서 대상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정보공개를 실시도록 하였으며 '94년 5~6월에는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정보공개제도 시행준비에 대한 지도·확인

교육 및 감사를 실시하여 '94년 7월 1일부터 정보공개 시범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이와 아울러 본격적인 입법추진을 위하여 '94년 7월 21일에는 정보공개심의 위원회를 발족하여 '95년 9월 15일까지 제13차의 입법심의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정보공개법 시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앞서 '94년 12월 21일에는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정부시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거친 바 있고 '95년 2월과 3월에는 각 1회씩 관계부처의 실무협의회를 거치는 한편, 입법·사법부 등 관계기관도 방문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협의를 거쳤으며, '95년 7월 20일부터 1개월간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경실련, 변협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조율하여 '95년 9월 16일에 법제처의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법제처 심의를 거쳐 10월 26일과 11월 2일에 차관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일부 부처의 이견제기에 의한 의견조정 필요성에 의하여 현재 보류상태에 있으며 '96년도중에 국회에 제출되어 입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정보공개법안의 주요내용

위의 언급한 정부의 정보공개법심의회를 거치고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심의조정된 내용 등을 토대로 한 정보공개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대상기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으로서 행정부외에 입법부나 사법부도 포함된다.

●정보공개 대상정보 및 공개방법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

하며 공개는 열람 및 복제물의 교부방법 등에 의함.

●적용제외대상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정한 사항
- 국가의 안전이나 국방·통일·외교·통상·재정·금융관련정보로서 공개시 국익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정보
- 공공기관의 내부인사에 관한 정보
-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규정된 개인정보
- 법인 및 개인의 영업상 비밀 및 금융에 관한 정보
-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제외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 비공개 필요성 소멸시 당해 정보 공개

●정보공개청구 및 공개절차

- 정보공개청구는 청구인의 이름·주소·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며
-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5일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 사유와 불복구제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시는 그 사실을 그 제3자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 정보공개는 통지서에서 지정한 일시·장소에서 하도록 하되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 혼합시

는 분리하여 부분 공개가 가능토록 하였다.

●공개비용부담

열람·복사 등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하도록 하되 공공목적 을 위하여 사용시는 비용감면이 가능토록 함.

●불복제절차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방법이 있다.

- 이의신청

공공기관의 공개여부 결정사항에 불복하는 자는 15일 이내에 당해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판시에는 정보공개제도의 특성에 의해 비공개 심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도 총괄 등

- 총무처장관이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기획, 총괄업무 등 제도를 총괄하도록 하였고,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마련 및 각종 자료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DC